성주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3년 5월 일
제 출 자 : 성주군수

1. 제정이유

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군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부여 및 평생교육 진흥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 협력기관·시설의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군민의 평생교육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진흥 사업의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4조)

나. 평생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5조 내지 제12조)

다. 군민의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 학습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13조 내지 제16조)

라.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해 학교·기관·단체의 시설을 평생 학습관으로 지정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17조 내지 제18조)

마. 평생교육진흥과 관련 각 단체 등에 지원된 경비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와 지원 경비 관리 사항을 규정(안 제20조 내지 제2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평생교육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라. 비용추계 미 첨부사유 : 별첨

마. 기 타

1) 조례(안) : 붙임과 같음

2) 입법예고결과 : 별도의견 없음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평생교육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주군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방침) ① 성주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도록 노력한다.
②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 되고, 누구나 희망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강구한다.
③ 군수는 군의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·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.

제3조(평생교육의 범위)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1.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주민 및 학생 대상 교육
2. 군수가 설치(위탁을 포함한다)한 교육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 및 학생 대상 교육
3. 군수가 평생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 교육
4. 학교에서 운영하는 토요프로그램(단, 정규 교과과정은 제외한다.)
5. 기타 평생학습 시책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경비 등의 지원) 군수는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1. 법 제2조, 조례 제3조에 규정한 교육 참여자 및 시설(또는 기관)
2. 법 제2조제2호에 규정한 평생교육기관
3. 조례 제14조에 규정한 평생학습 진흥 사업
4. 조례 제17조에 규정한 평생학습 지정기관 이용자 및 시설(또는 기관)
5.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평생학습 협력기관·시설(또는 기관)
6.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(학습동아리) 및 시설(또는 기관)

제 2 장 평생교육협의회

제5조(설치)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「성주군 평생교육협의회」(이하 "협의회"라 한다.)를 둔다.

제6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평생교육 진흥사업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
3.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
4. 성주군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5. 기타 평생교육 진흥에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

제7조(구성)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,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을 포함하여 군 실과소장 중 4명 이내로 하며
2. 위촉직 위원은 성주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, 성주교육지원청 담당과장, 평생교육전문가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.

제8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군 의원, 성주교육지원청의 담당 과장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9조 (의장 등의 직무)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.

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0조 (위원의 위촉 해제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
2.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(6개월 이상)등으로 업

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3.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
4.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

②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위촉 해제 된 때에는 군수가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.

제11조(회의 및 간사)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와 간사 각 1명을 두되, 서기는 평생교육업무담당자로 하며,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담당으로 한다.

④ 협의회의 의결사항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 결의할 수 있다.

제12조(수당 등의 지급)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「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 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 3 장 평생학습관 설치·운영

제13조(설치)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주군 평생학습관(이하 “평생학습관”이라 한다)을 설치 또는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제14조(기능)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평생교육 관련 학습상담 및 정보의 제공
2.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 및 보급
3.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
4.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
5. 주민(관내학생 포함) 대상 학습동아리 육성 및 학습자 지원
6. 평생학습 관련 행사의 개최·유치 및 지원
7.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관련 조사 및 자료개발
8. 평생학습축제 등 군민의 평생학습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의 운영 및 지원
9.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15조(운영) ①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,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평생학습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·단체에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평생학습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장, 평생교육사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고, 조직과 시설을 갖출 수 있다. 다만, 군수는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학습관장을 평생교육담당 실과장이 겸직하게 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평생학습관을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행정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16조(수강료 등의 징수 및 반환) ① 군수는 평생학습관이 관리·운영하는 시설 또는 강좌의 이용자에게 사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.

②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협의회에서 정하여야 하며, 평생교육 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의거 수강료를 징수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환 등 수강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1. 부득이한 사유로 평생학습관 등의 시설을 폐쇄하거나 운영을 못하게 된 경우
2.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이 정지되어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
3.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

④ 제3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1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.

제17조(평생학습 협력기관·시설의 지정) ① 군수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학교· 기관·단체 등의 관내 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학습 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우 학교·기관·단체 등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여야 하며, 군수는 이용시간 동안 시설물의 관리·운영의 책임을 진다.

제18조(사업의 공동추진) 군수는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주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19조(자원봉사자)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·활용할 수 있으며,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와 급량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4 장 보 칙

제20조(지도·감독) ① 군수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각 단체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및 조사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21조(보조금의 지원·정산) ① 평생교육진흥 관련 지원 경비에 대한 관리는「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2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별표 1>

수강료 반환기준(제16조 제3항 관련)

구 분		반환사유 발생일	반 환 금 액
1. 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		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수업을 할 수 없게 된 날	이미 낸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
2. 제16조 제3항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	가.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	·수업시작 전	이미 낸 수강료 전액
		·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	이미 낸 수강료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
		·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	이미 낸 수강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
		·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	반환하지 아니함.
	나.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	·수업시작 전	이미 낸 수강료 전액
		· 수업시작 후	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수강료와 (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)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 고		총 수업시간은 수강 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	